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9. 2) 상정

○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9. 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 인상)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부천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안 제5조)

다.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5

조까지)

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 및 제2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안 제2조에 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 요망?	○ 주민이라는 용어 설명(주민등록법)
○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 미지급사유?	○ 비상설 협의체 기구로 1회성으로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정함.
○ 조례안 제2조 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1호는 부합하나 2,3호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과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조례안에서 주민의 개념이란 포괄적 주민으로 해석하고 있음.(주민등록법상)
○ 조례안 제2조(주민) 2,3호는 조례상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데?	○ 조례안 제2조(주민) 2,3호는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체 임직원이 동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부천시에 기여한 분들을 뜻하는 것으로 포괄적임.
○ 우리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체	○ 네, 맞습니다.

<p>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어 예산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도 참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조례안 제 2조(주민) 2,3호를 포함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회의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이며, 구성인원은 변경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기능)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로 예산 심의가 오면 시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드리는 사항으로 심의, 확정권을 행사하는 시의원님들의 역할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16조 4항 1호 주민자치 위원을 동 자생단체원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생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은 있으며, 그 외 자생단체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16조 3항과 5항 주민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초과 할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 여건 상 인원은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센터 회의실 수용인원에 맞추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즉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조례안에 100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의견을 존중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8조4항 1호에 다른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도 불부합한 것이 아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소재지가 변동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타 지역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의 지원

<p>있음. 법인체의 경우는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음. 조례안 제14조에 시민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 제19조의 기능에 있어 지역내의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의 선정은 지역 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제27조 주민의견수렴에 있어 시장은 금번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를 하였는지? ○ 제28조의 재정 및 실무지원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인근 자치단체 운영조례를 보면 경기도에도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부천시의 경우 경기도내 시군보다 광범위하게 조문이 되어 있음 그 이유는? ○ 조항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조례라고 동의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세금을 안내는 비영리법인이 참여 	<p>및 적극적인 설명 등이 필요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의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민 공청회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나 시민단체를 상대로한 공청회는 개최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음. ○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07년도와 금년 초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 중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음. ○ 비영리 목적인 사회단체임.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참여하는 것이 여론수렴의 통로라고 할 것임.
--	--

<p>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을 보면 각각의 조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많음. 이는 5장 전체에 3개 조문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 ○ 본 조례가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호하며, 재정경제국장께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출장을 다녀 온 걸로 알고 있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설명 요함? ○ 우수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함? 	<p>* 광범위한 여론수렴차원에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에는 조례상에 중요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각각의 조문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고 살아나려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만족하고 희망을 느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03년에 시작을 했고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게 모범사례가 돼서 2006년에는 전국 지방혁신프로그램으로 해서 100 히트 행정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고 특히,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가서 광주시의 사례를 OECD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의원들하고 토론도 했던 사례가 있었음. ○ 동 지역회의라고 하는데요 지역회의에서, 700몇 십 건 정도의 주민건의 사항이 요구돼서 그동안 50여 건의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건의사항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 북구에 무등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등산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명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 원
---	--

	들여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방역이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이걸 갖다가 그냥 방역차가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역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GPS를 활용한 방역제도를 만드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것들이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한 사례임.
--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조례안 제2조 주민의 정의에서 조례안 2,3호는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와 부합되지 않음.
- 조례안 제11조 기능에서 시의원으로서 권한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조례안 제16조 주민회의 위원 동별 100명이내는 향후 정치도구화 및 세력화 될 수 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 시 주민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조례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민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음. 세부적인 보완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여론수렴 부족, 준비부족, 예산낭비 우려, 사회적 합의절차 부족으로 주민 공감대 미 형성, 추진시기 부적절 등으로 반대함
- 급조된 연구회 구성으로 소통이 되지 않음. 주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동 주민회의 인원도 10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함이 바람직 반대함.

나. 찬성토론

- 민선 5기를 맞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회의를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연구회,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지방의회(시의원)의 권한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은 시대적 흐름으로 그동안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 일정부분을 시민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열망을 담아 조례 제정함이 바람직하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하는 것이 타당함.
- 좋은 제도를 몇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시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 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로 판단되어 찬성함.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참여 예산시민위원회

제7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

2. 동 주민회의가 추천한 동별 주민위원 2명

제8조(위원의 위촉 · 해촉과 임기) ①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시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시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의 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회의) ① 시민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8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공개의 원칙) 시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시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대상 안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한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① 시민위원회는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론회는 시민위원회가 주관한다.

③ 그 밖에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참여 예산주민회의

제16조(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주민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④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동 주민자치위원

2.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동장은 주민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 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7조(운영) ① 주민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주민회의를 대표하고 주민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제출하며 주민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기능)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의 수렴
2. 지역 내의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의 선정
3.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회의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주민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0조(회의) ① 주민회의의 최초 소집은 동장이 한다.

② 주민회의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

③ 주민회의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4장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시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위원회위원장이,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월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시민예산학교

제25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시민과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

청회, 보고회,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및 시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참석 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